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주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616

발의연월일: 2024. 8. 7.

발 의 자:김병주·정성호·소병훈

민병덕 · 서영교 · 이기헌

정동영 · 김재원 · 김준혁

송옥주 • 부승찬 • 이수진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각 지방자치단체는 재난 피해 시민지원을 위한 '시민안전보험'을 운영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서 사회재난으로 규정된 재난에 대해서만 보상이 가능한 상황임.

최근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로 국민들의 재산에 직·간접적인 피해가 발생한 바가 있으나, 현행법의 '사회재난'의 유형으로는 화재, 붕괴, 폭발, 교통사고, 화생방사고, 환경오염사고, 다중운집인파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로 하고 있어 북한의 오물풍선으로 피해를 입은시민에 대한 지원근거가 미비한 상황임.

이에 사회재난의 정의 규정에 평상시 북한의 도발로 발생하는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를 추가하여 북한 도발로 인하여 피해를 입게되는 국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호 나목).

법률 제 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나목 중 "다중운집인파사고 등으로"를 "다중운집인파사고· 북한의 도발(평상시에 한정한다) 등으로"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제3조(정의)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국민의 생명ㆍ신	1
체·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	
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다	
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사회재난: 화재・붕괴・	나
폭발 • 교통사고(항공사고	
및 해상사고를 포함한다)	
· 화생방사고 · 환경오염사	
고 • 다중운집인파사고 등	<u>다중운집인파사고 • 북</u>
<u>으로</u> 인하여 발생하는 대	한의 도발(평상시에 한정
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한다) 등으로
이상의 피해와 국가핵심기	
반의 마비, 「감염병의 예	
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	
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미	
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	
한 특별법」에 따른 미세	
먼지, 「우주개발 진흥	

법」에 따른 인공우주물체	
의 추락・충돌 등으로 인	
한 피해	
2. ~ 13. (생 략)	2. ~ 13. (현행과 같음)